

서울고등법원 2017. 1. 11 선고 2016나2028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1. 11 선고 2016나20283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5687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6. 11. 16.

판결 선고 2017. 1.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56876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이하에서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등기공무원이 아래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행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로 인해 성남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F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반면,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124,020,00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611,328,000원 중 일부인 60,000,000원 이상 합계 110,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가. 절차적 위법행위

피고의 등기공무원은 대법원고시 제44호 멸실회복등기고시 제3호에서 정한 1953. 3. 31.까지의 등기기한을 경과하여 1954. 11. 5.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실체적 위법행위

①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에 망 G이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이 사건 토지의

복구대장(갑 제3호증의 1)의 소유자란에도 망 G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복구대장이 복구된 것은 1953. 3. 20.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이미 위 복구대장이 존재하였고, 토지대장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가 망 G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판단

가. 절차적 위법행위의 존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법원고시 제44호 멸실회복등기고시 제3호에 멸실등기의 회복등기신청, 촉탁 또는 공정증서등 정, 등본의 제출 기한이 1953. 3.

31.까지로 규정되었다가, 위 멸실회복등기고시 제3호의 기한이 계속 변경·고시되면서 대법원고시 제63호에 의하여 1954. 12. 31.까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1954. 11. 5.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이 연장된 멸실등기의 회복등기신청기한인 1954. 12. 31.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행위의 존부

제1심판결 이유 4.가.의 2)항 중 7쪽 3행의 '그러나'부터 15행의 '고려하면'까지 해당 부분 기재에, 이 법원의 성남시 수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이 토지등급조사가 이루어진 1961. 8. 15.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시점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의 등기공무원은 앞서 본 대법원고시 제44호로 정해진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통칙 및 각종 회복등기의 신청절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망 G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서도 회복에 의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최규홍

판사엄상문

판사박지연

별지